



서우회계법인 베트남
SEOU VIETNAM ACCOUNTING COMPANY LIMITED

Tax Updates in Q2 2025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25 년도 2 분기 베트남 Tax Updates 를 전달해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 사항을 선별하여 작성된 국문본을 전달 드리오니 (영문본은 별도 발행),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회계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귀사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조성룡 회계사 (HANOI)

김형준 회계사 (HCMC)

최준 회계사 (HCMC)

(서우회계법인베트남대표)

(호치민 지점장)

(호치민 지점 Partner)

Mobile: +84 98 548 7377

Mobile: +84 90 247 7335

Mobile: +84 813 767 067

Email: csrgs@seouvietnam.com

Email: kimhj@seouvietnam.com

Email: junchoi@seouvietnam.com

HANOI: 10F, Charmvit Tower, 117 Tran Duy Hung, Cau Giay, Hanoi

HCMC: 14th floor, Citilight Building, No 45 Vo Thi Sau, Tan Dinh Ward, District 1, HCMC

목차

법인세법 개정사항	4
1. 법인세 납세의무자의 확대 [Article 2]	4
2.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시점 변경(Clause 4, Article 3)	4
3. 부동산양도이익과 일반사업손실의 상계 허용 [Clause 3, Article 7]	4
4. 세무상 비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불인정 (Clause 1, Article 9)	5
5. 소규모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추가 (Article 10).....	5
6. 법인세 인센티브 대상 산업 추가 (Article 12).....	6
7. 법인세 인센티브의 삭제 및 축소 (Article 12).....	6
8. 과학기술개발기금 적립 한도 상향 [Article 17].....	7
부가세법 개정사항	7
1. 영세율 적용대상에 내국수출입 추가 [Clause 1 a, Article 9]	7
2. 2025 년 6 월 30 일자 시행령 제 174/2025/ND-CP 호 – 부가가치세(VAT) 인하에 관한 규정 7	
3. 2025 년 7 월 1 일자 시행령 제 181/2025/ND-CP 호 – 현금 외 지급 증빙에 관한 세부 지침 8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관련규정 개정사항	9
1. 전자상거래용 세금계산서 기호 변경(Clause 1, Article 5)	9
2. 전자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의무 전환 (Clause 2, Article 12)	9
사회보험 개정사항	9
1. 사회보험 의무 적용대상 확대 (Clause 1, Article 2)	9
2. 난임 치료 중인 여성 근로자의 출산 급여 수급 인정 및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유연성 확대 (Clause 5, Article 50 and Clause 3, Article 53)	10
3. 사회보험 체납·회피 및 그에 대한 제재 규정 보완 (Article 38, Article 39, Article 40, Article 41).....	10
4. 단기 병가에 대한 사회보험 상 병가급여 산정 기준 변경 (Article 45)	11
5. 기준임금(reference level) 도입에 따른 구체 규정 – 기존 기본급 대체	11
6. 2025 년 6 월 25 일자 제 158/2025/ND-CP 호 시행령 – 의무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 ..	12

기타 법령의 개정 12

- 1. 외국인의 VneID 에 대한 소개12
- 2. 관세법 개정사항13
- 3. 2025 년 5 월 17 일부터 발효되는 제 198/2025/QH15 호 국회 결의 – 민간 부문 발전
촉진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결의13

주요 OFFICIAL LETTERS 17

- 1. 2025 년 6 월 10 일자 제 1686/CT-CS 호 – 토지임대료 및 토지사용료에 관한 안내...17
- 2. 2025 년 6 월 11 일자 제 10500/CCTKV.XVI-QLDN1 호 – 명세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안내.....17
- 3. 2025 년 4 월 4 일자 제 244/CCTKV17-QLDN1 호 – 고객 지원비용에 관한 안내.....18
- 4. 2025 년 6 월 24 일자 제 1992/CT-CS 호 –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용에 관한
안내 18
- 5. 2025 년 5 월 5 일자 제 4370/BTC-DNTN 호 – 행정구역 변경 시 사업자등록 관련 안내
18

법인세법 개정사항

2025년 6월 14일에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법(No. 67/2025/QH15, “신 법인세법”)은 10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며 2025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납세의무자의 확대 [Article 2]

외국 기업이 베트남 내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디지털 플랫폼을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포함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Note)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등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을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명시함에 따라 기존의 간접 과세방식(외국인 계약자세 등)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향후 발표될 하위 법령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시점 변경(Clause 4, Article 3)

기존 법인세법 (Clause 1, Article 1 of Law No. 71/2014/QH13 and Article 1 of Circular No. 96/2015/TT-BTC)	신 법인세법 (Clause 4, Article 3)
기업은 해외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을 베트남으로 송금할 경우에만 법인세(CIT)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업은 해외자회사의 이익이 베트남으로 송금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법인세(CIT)를 납부해야 함
(Note) 상기 규정 상 “이익”의 정의가 불분명하나, 모회사에 대한 송금, 즉 배당을 전제로 하므로 위 “이익”은 이익잉여금을 구성하는 당기이익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회계기준 상 피투자회사의 이익을 투자회사가 인식하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양도이익과 일반사업손실의 상계 허용 [Clause 3, Article 7]

기업은 손실을 발생한 사업활동과 이익을 창출한 사업활동 간에 과세소득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단, 부동산 양도, 투자 프로젝트 양도, 투자 프로젝트 참여권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다른 사업손실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 후 남은 소득은 여전히 소득이 발생한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법인세율로 과세됩니다.

(Note)

기존 법인세법에서는 부동산 양도, 투자 프로젝트 양도, 투자 프로젝트 참여권 양도에서 발생한 손실은

일반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부동산 양도, 투자 프로젝트 양도, 투자 프로젝트 참여권 양도에서 발생한 이익은 일반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상계 대상 일반사업이 법인세 인센티브 대상 사업만 아니라면 부동산 양도, 투자 프로젝트 양도, 투자 프로젝트 참여권 양도에서 발생한 이익은 일반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과 상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4. 세무상 비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불인정 (Clause 1, Article 9)

- 4.1. 우선 인정비용에 대한 요건으로서, 정부가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현금지급증빙서류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및 절차는 재무부에서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Note)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181/2025/ND-CP호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공급대가금액이 **500만 동 이상인** 재화 및 용역의 구매(수입 재화 포함)에 대해 비현금지급 증빙(non-cash payment documents)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였으며, 이는 기존 2,000만동에서 크게 축소된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이후 부가세법 개정사항 3번 항목 참조). 향후 법인세법 하위 법령에서 상세히 안내될 특별한 경우(즉,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이러한 부가세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4.2. 불인정 비용으로서, 다음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석유 및 가스 탐사, 시추, 채굴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
- 비금융기관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해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현행 민법상 허용된 한도(현재 연 20%)를 초과하는 금액**;
- 타 전문 법률에서 정한 지출 요건 및 지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 이미 공제된 매입 부가가치세 (단, 생산 및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나 아직 완전히 매입부가세가 공제되지 않았고, 세액 환급 대상도 아닌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5. 소규모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추가 (Article 10)

현행 법인세율은 20%이나, 금번 개정에 따르면 연간 총 매출이 VND 3 billion 이하이면 15%, VND 3~50 billion이면 17%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적용기준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될 것이며,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다만, 위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기업이 특정회사의 자회사 또는 관계기업인 경우, 그 특정회사가 동일한 소규모기업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법인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법인세 인센티브 대상 산업 추가 (Article 12)

혁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여,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 대상 사업 분야가 확대되었습니다.

번호	투자 분야	관련 조항	우대 세율	면제 및 감면	비고
1	첨단기술 기업; 첨단기술 농업기업; 과학기술 기업	제 12 조 제 2 항 e 호	15 년간 10%	면제: 4 년 50% 감면: 9 년	첨단기술기업 인증 필수; 첨단기술 농업기업 인증 필수; 관할 기관의 인증서 보유 필수
2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기타 디지털 기술 제품 제조	제 12 조 제 2 항 n 호	10 년간 17%	면제: 2 년 50% 감면: 4 년	생산성 및 현지화 기준 충족 시 적용
3	중소기업 지원 시설에 대한 투자 (기술 지원, 인큐베이팅, 공유오피스 등)	제 12 조 제 2 항 o 호	10 년간 17%	면제: 2 년 50% 감면: 4 년	창업 지원 기준 충족 필요
4	언론 활동 (신문 광고 포함)	제 12 조 제 2 항 u 호	10% (기한 없음)	해당 없음	허가된 언론 기관에 적용

7. 법인세 인센티브의 삭제 및 축소 (Article 12)

금번 개정을 통해 법인세 인센티브가 삭제되거나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단지(Industrial Park)에 대한 지역기준(location-based)의 세제 인센티브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장되는 투자 프로젝트는 더 이상 2년간 법인세 면제 + 추가 4년간 50% 세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경제구역(Economic Zone) 중, 일반 지역(즉, 어려운 또는 특별히 어려운 사회경제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위치한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우대

법인세율(preferential CIT rate)이 축소됩니다.

- 총 투자금액이 VND 6 trillion 이상인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더 이상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 우대세율 10% 적용대상).

8. 과학기술개발기금 적립 한도 상향 [Article 17]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는 기업, 조직, 공공서비스 기관은 **연간 과세소득의 최대 20%까지(중전에는 10%)** 자체 과학기술개발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법 개정사항

2025년 6월 25일에 국회를 통과한 부가세법(No. 90/2025/QH15, “신 부가세법”)은 7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며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 1번과 같습니다.

1. 영세율 적용대상에 국내이동하는 수출업 추가 [Clause 1 a, Article 9]

기존 부가세법 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로 해외, 보세구역, 해외로 이동하는 비행기 및 duty-free shop으로 판매되는 재화를 나열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내이동하는 수출(**on-the spot exports**) 재화가 추가되었습니다.

(Note)

국내이동하는 수출업 제도는 베트남 기업이 외국기업과 제조 (또는 임가공) 계약을 맺은 후 제조 (또는 임가공) 활동의 결과물인 재화를 계약 당사자(외국기업)에게 인도(수출)하는 대신 외국기업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 내의 타 기업에 인도하는 거래로서, 최종 수출 전 추가가공이 필요한 경우에 흔히 발생합니다.

관세당국은 이러한 재화의 국내이동에 대해 수출거래가 아닌 내수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내국수출입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관련 기업에게 실무상 큰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관세법은 내국수출입 제도를 공식화하여 이러한 재화의 국내 이동 시 수출 및 수입세관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국경을 이동하는 재화와 마찬가지로 관세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명확히 하였고, 부가세법은 국내이동하는 수출업 거래를 영세율 대상으로 추가하여 법령간의 정합성 또한 확보되었습니다.

2. 2025년 6월 30일자 시행령 제 174/2025/ND-CP 호 - 부가가치세(VAT) 인하에 관한 규정

이 시행령은 기존 정책에 비해 2% 부가가치세 인하 대상 품목 및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범주 외에도, **석유류 제품, 화학 제품, 운송 및 물류 서비스,**

정보기술 관련 상품 및 서비스가 새롭게 VAT 인하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0% VAT율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중,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는 2% 세율 인하가 적용됩니다.**

-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업, 금속 제품, 광물 제품(석탄 제외): 해당 품목은 시행령에 첨부된 부속서 I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특별소비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석유 제외): 해당 품목은 부속서 II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율인하 적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3. 2025년 7월 1일자 시행령 제 181/2025/ND-CP 호 - 비현금 외 지급증빙에 관한 세부 지침

1) 비현금지급 증빙의 보유 의무(Clause 1, Article 26): 사업자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금액이 **500만 동 이상인 재화 및 용역의 구매(수입 재화 포함)에 대해 비현금 지급 증빙(non-cash payment documents)을 구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현금지급 증빙"이란 2024년 5월 15일자 시행령 제52/2024/ND-CP(비현금 지급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현금 외 방식으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의미하며, **단순히 구매자가 판매자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송금증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Note)

시행령 제 52/2024/ND-CP

10. 비현금 지급 수단(이하 "지급 수단")이란,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 신용카드 발급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및 전자지갑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발행한 수단**으로서,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거래와 관련해서 실행하는 수단을 말한다; 수표, 지급지시서, 지급위임서, 수금지시서, 수금위임서, 은행카드(직불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포함), 전자지갑 및 베트남 국가은행(SBV)의 규정에 따른 기타 지급 수단.

2) 제3자를 통한 지급 등 특수 사례 (Clause 2, Article 26)

- 재화 또는 용역이 **제3자 명의로 비현금 지급**되는 경우(예: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한 경우 포함), 해당 제3자 지급 방식은 서면 계약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지정된 제3자는 법에 따라 영업하는 개인 또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 회사의 직원이 먼저 지급하고 회사로부터 정산(상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회사의 직원이 자체 재무규정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비현금 지급을 하고 회사가 비현금 방식으로 해당 직원에게 사후 정산(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동일한 일자에 같은 공급자로부터 여러 번의 거래를 통해 총 500만 동 이상을 구매한 경우에도, 비현금지급 증빙이 있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관련규정 개정사항

2025년 5월 31일 재무부 발행 시행규칙 제32/2025/TT-BTC호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용 세금계산서 기호 변경(Clause 1, Article 5)

세금계산서 양식 기호 규정이 보완되어, 전자상거래용 세금계산서를 위한 '양식번호 7'이 추가되었습니다. 동시에, 전자상거래 세금계산서를 구분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유형 기호 'X'도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7K25XAB"는 2025년에 발행된, 세무서에 등록된 기업의 전자상거래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2. 전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의무 전환 (Clause 2, Article 12)

2025년 6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PIT)를 원천징수하는 기관은 기존에 사용하던 전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의 사용을 중단하고, 시행령 제70/2025/ND-CP에 따라 규정된 전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포맷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회보험 개정사항

2024년 9월 26일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보험법(No. 41/2024/QH15)은 2025년 7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며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보험 의무 적용대상 확대 (Clause 1, Article 2)

의무 사회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 범주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 무기한 근로계약 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다르더라도, 직무, 급여, 보수 및 일방 당사자의 관리·감독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됩니다.
-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업의 경영자, 감사, 국가자본대표, 기업자본대표, 이사회 구성원, 총괄이사(CEO), 이사, 감사위원회 구성원 또는 감사, 그리고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의 법률상 선출된 기타 **경영직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는 자**
- 지역(읍·면·동)의 비상근 직원
- 정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의 소유주
- 군 소속 공무원
- 상근 민병대원
- 해외에 주재하는 베트남 외교사절단 구성원의 배우자로서 재직 기간 중 국가예산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생활비를 지원받는 자

2. 난임 치료 중인 여성 근로자의 출산 급여 수급 인정 및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유연성 확대 (Clause 5, Article 50 and Clause 3, Article 53)

출산 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일 직전 24개월 중 최소 6개월 이상 의무 사회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5일에서 최대 14일 이상까지 **배우자 출산 휴가(남성 육아휴직)**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근무일 기준 5일
-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하거나 아이가 임신 32주 이전에 출생한 경우: 근무일 기준 7일
- 아내가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근무일 기준 10일, 셋째 아이부터는 자녀 1명당 추가로 3일
- 쌍둥이 제왕절개 출산의 경우: 근무일 기준 14일, 셋째 아이부터는 자녀 1명당 추가로 3일

3. 사회보험 체납·회피 및 그에 대한 제재 규정 보완 (Article 38, Article 39, Article 40, Article 41)

의무 사회보험 및 고용보험의 납부 지연 또는 **회피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피행위 신설).

- 체납 보험료의 강제 납부
- 체납된 사회보험 및 고용보험 기금에 대해 하루 0.03%의 이자율로 연체이자 부과
-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 포상 및 표창 대상에서 제외
- 납부 회피 행위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서, 사용자가 의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전액·정기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해당 손해를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2024년 사회보험법 제13조 제8항 - 사용자의 책임)

4. 단기 병가에 대한 사회보험 상 병가급여 산정 기준 변경 (Article 45)

근로자의 병가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반일 병가: 1일 병가급여의 1/2로 계산** (신설)
- 1일 병가: 월 병가급여를 24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

5. 기준임금(reference level) 도입에 따른 구체 규정 - 기존 기본급 대체

2024년 사회보험법은 일부 사회보험 급여 및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기본급을 대체하는 '**기준임금(reference level)**'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요양 급여:** 1일당 급여는 기준임금의 **30%** (2024년 사회보험법 제 46 조 제 3 항)
- **출산 관련 일시금:** 자녀 1인당 **기준임금의 2 배**, 출생·위탁·입양 시점의 월 기준임금 적용 (해당 조항 제 1, 2, 3 항)
- **산후 요양 급여:** 1일당 급여는 기준임금의 **30%** (제 60 조 제 3 항)
- **장례비:** 사망 시점의 월 기준임금의 **10 배** (제 85 조 제 1 항, 제 108 조 제 1 항)
- **유족연금:** 가족 1인당 매월 기준임금의 **50%**, 부양가족일 경우 **70%** (제 87 조)

기준임금(reference level)이란, 특정 사회보험 급여 및 보험료 산정을 위해 **정부가 결정하는 금액**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경제성장률, 국가예산 및 사회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2024년 사회보험법 제 7 조)

또한, 2024 년 사회보험법 제 141 조 제 13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급여기준(기본급)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본 법에서 규정한 기준임금은 법정급여기준과 동일하다. 법정급여기준이 폐지된 이후에는 기준임금이 해당 법정급여기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된다.”

현재, 제 73/2024/NĐ-CP 호 시행령 제 3 조에 따르면 적용 중인 법정급여기준(기본급)은 월 2,340,000 VND 이며, 이에 따라 2024 년 사회보험법상 기준임금도 동일하게 **2,340,000 VND** 로 적용됩니다.

6. 2025 년 6 월 25 일자 제 158/2025/NĐ-CP 호 시행령 - 의무 사회보험에 관한 규정

2025 년 6 월 25 일, 정부는 제 158/2025/NĐ-CP 호 시행령을 공포하여, 의무 사회보험에 관한 2024 년 사회보험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 이행을 안내하였습니다.

158 호 시행령 제 3 조 제 5 항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의무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사회보험법 제 2 조 제 1 항 a 호에 명시된 자 중, 시간제 근무자로서, 158 호 시행령 제 7 조 제 2 항에 따라 산정된 월급여가 의무 사회보험 산정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 노동법에 따라 체결된 수습계약에 따라 근무 중인 자

따라서, 노동법상 수습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법령의 개정

1. 외국인의 vNeID 에 대한 소개

1. 올해 7 월부터 베트남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공공행정서비스이용 및 전자정보통합을 위해 레벨 2 전자신원확인발급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vNeID Level-2).

2. 특히, 법인대표자인 외국인의 경우 조직신원 확인 및 전자 신원 계정을 통한 세금 신고를 위해 레벨 2 전자신원확인발급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위 1은 외국인 개인이 "여권, 거주증, 공안이 발급한 거주확인서 및 개인명의 휴대폰(법인명의 불가)"를 지참하고 거주지관할 출입국 관리과를 직접 방문하여 사진촬영, 지문날인 및 신청서 작성/제출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ID와 PW를 발급받아 휴대폰에 설치한 VNeID 앱에 로그인 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는 거주증이 있는 외국인은 가급적 진행하는 것이 좋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법인장은 위 1을 진행하고 2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7/1일부터 세금신고 방법이 변경되어 납세자 식별을 법인장의 VNeID 확인을 통해 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입니다(아직까지는 구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도 허용 중임). 2는 1까지 마친 앱에서 조직신원확인 메뉴를 선택하고 회사정보 입력 후 내가 법인장임을 등록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현재는 법인계좌의 인터넷뱅킹 시 법인장의 생체정보나 OTP 등을 이용하나, 향후에는 법인장의 VNeID를 통한 신원확인을 강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관세법 개정사항

2025년 6월 25일에 국회를 통과한 관세법(No. 90/2025/QH15)은 2025년 7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법에서는 제 47a 조를 신설하여, 국내이동하는 수출입 재화(on-the-spot export and import goods)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내국 수출입 물품이란, 외국 상인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 기업과 외국 상인 간의 매매, 가공, 임대 또는 대여 계약을 근거로 하여, 베트남 국내에서 인도 및 인수되는 물품
- 이러한 물품은 관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관의 검사 및 감독을 받아야 함.

3. 2025년 5월 17일부터 발효되는 제 198/2025/QH15 호 국회 결의 - 민간 부문 발전 촉진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결의

본 결의에 따라 정부는 세금, 수수료, 비용 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 부문 지원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중 중소기업(SME)에 대해 최초 기업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법인세(CIT)를 면제하는 정책이 포함됩니다.

(Note)

시행령 제 80/2021/ND-CP 호에 따른 **중소기업(SME) 분류 기준 요약:**

기업은 **업종,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수, 연간 매출, 총자본금**을 기준으로 **초소기업, 소기업, 중기업**으로 분류됩니다.

1. 초소기업(Micro Enterprises)

○ **농업, 임업, 어업, 산업, 건설 분야:**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수 10 인 이하이며, 연간 매출 또는 자본금이 30 억 동 이하

○ **상업 및 서비스 분야:**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수 10 인 이하이며, 연간 매출이 100 억 동 이하 또는 자본금이 30 억 동 이하

2. 소기업(Small Enterprises)

○ **농업, 임업, 어업, 산업, 건설 분야:**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수 100 인 이하이며, 연간 매출이 500 억 동 이하 또는 자본금이 200 억 동 이하 (단, 초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상업 및 서비스 분야:**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수 50 인 이하이며, 연간 매출이 1,000 억 동 이하 또는 자본금이 500 억 동 이하 (단, 초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함)

3. 중기업(Medium Enterprises)

○ **농업, 임업, 어업, 산업, 건설 분야:**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수 200 인 이하이며, 연간 매출이 2,000 억 동 이하 또는 자본금이 1,000 억 동 이하 (단, 초소기업 또는 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상업 및 서비스 분야:**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수 100 인 이하이며, 연간 매출이 3,000 억 동 이하 또는 자본금이 1,000 억 동 이하 (단, 초소기업 또는 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함)

또한, 다음과 같은 혁신 스타트업 및 기타 기업·조직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세금 및 수수료 감면 정책도 도입되었습니다.

- **혁신 스타트업 기업**, 스타트업 투자펀드 운용사, 혁신 스타트업 지원 중간기관이 혁신 창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 2 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이후 4 년간 납부세액의 50% 감면(면제 및 감면 기간의 산정은 법인세법에 따름)

(Note)

2018 년 4 월 12 일자 제 01/2018/TT-BKHCN 호 시행규칙 제 2 조 제 1 항에 따르면, **혁신 스타트업 기업**이란 지식재산권,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활용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최초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24일자 제 98/2023/QH15 호 결의안 제 3 조 제 1 항에서는, **혁신 스타트업 기업**을 "지식재산권,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활용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혁신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 지분, 출자권리, 주식 및 지분 인수권 양도소득에 대해 → 개인소득세(PIT) 및 법인세 전액 면제
- 혁신 스타트업 기업, R&D 센터, 혁신센터, 혁신 스타트업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및 과학자의 급여·임금소득에 대해 → 2년간 PIT 면제, 이후 4년간 납부세액의 50% 감면
- 중소기업(SME)에 대해 → 최초 기업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법인세 면제
- 대기업이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부담한 교육 및 재교육 비용은 →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 시 손금산입 가능
- **2026년 1월 1일부터 → 가계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추정과세 방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됨**

(Note)

위 가계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식의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a. 「국세기본법」 제 38/2019/QH14 호

- **제 51 조:**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요건을 충족하거나 세무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신고방식 적용 가능
- **제 3 조 및 제 4 조:** 납세의무자 및 세금 신고의 원칙 규정

b. 「제 123/2020/NĐ-CP 호 시행령」 및 개정 시행령 「제 70/2025/NĐ-CP 호」

- 연간 매출이 **10 억 동(VND)**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 DB 와 연계된 POS(전자금전등록기) 기반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의무화(2026년 1월 1일부터)**

제 11 조. POS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1. 다음과 같은 사업자(개인 또는 가계사업자)는 POS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함:
 - 제 51 조 제 1 항, 제 90 조 제 2 항, 제 91 조 제 3 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 연간 매출이 10 억 동 이상인 경우
 -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종 (예: 쇼핑몰, 슈퍼마켓, 소매점(자동차·오토바이 제외), 음식·음료, 식당, 호텔, 여객 운송, 도로 운송 지원 서비스, 예술·오락·영화, 기타 개인 서비스 등)

c. 개정 부가가치세법(2024 년 제 48/2024/QH15 호)

- **제 5 조 제 25 항:** 연간 매출이 2 억 동 이하인 개인 및 가구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부가가치세 면제

"25 항. 연간 매출이 2 억 동 이하인 개인 및 가계사업자가 생산 또는 판매한 재화·서비스는 면세 대상이다. 또한 비사업자가 판매하는 자산, 비축물자 관리기관이 판매하는 재화, 법률에 따른 수수료 및 요금도 면세된다."

- **시행일:** 2026 년 1 월 1 일부터

d. 「결의안 제 198/2025/QH15 호」

- **2026 년 1 월 1 일부터 추정과세방식(정액납세제) 전면 폐지**
- 모든 개인사업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

e. 「재무부 회칙 제 40/2021/TT-BTC 호」

- **제 6 조 제 2 항:** 개별 신고방식에 따른 세금 계산 적용

개별 신고방식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a) 이동 상인(travelling trader; 고정사업장 없이 여러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사업자) b) 개인 건설도급자 c) 베트남 국가도메인 ".vn" 양도자 d) 정기 신고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디지털 정보상품·서비스 제공자

2. 부가세 납부 방식 요약 (2026 년부터 적용)

사업 규모	과세 방식	요건
연매출 ≤ 2 억 동	면세	세금 신고 불필요, 세금계산서 발행 없음
연매출 > 2 억 동	신고방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정기 세금 신고
모든 개인사업자	정액납세 방식 폐지	2026 년부터 정액납세(추정과세) 금지
특정한 경우의 개인사업자 (예: 일시적 사업 등)	개별 신고방식	비정기 임대, 일회성 사업활동 등 개별 과세 적용

- 2026 년 1 월 1 일부터 사업자등록세 폐지
- 국가기관의 조직 개편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문서를 재발급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조직·개인·기업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 면제

주요 OFFICIAL LETTERS

1. 2025 년 6 월 10 일자 제 1686/CT-CS 호 - 토지임대료 및 토지사용료에 관한 안내

해당 공문에 따르면, 2024 년 토지법 제 157 조 제 1 항 및 제 103/2024/ND-CP 호 시행령 제 39 조는 토지임대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 년 토지법 제 157 조 제 3 항에 따르면, 토지사용료 또는 토지임대료가 면제되는 경우, 면제 대상 부분에 대한 토지평가 및 요금 산정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토지사용자는 별도로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제 103/2024/ND-CP 호 시행령은 토지사용료 또는 토지임대료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결정 권한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다음과 같은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관리기관 및 토지등록사무소는 매년 토지사용료 및 토지임대료 면제 대상 사례를 종합·정리하여
- 관련 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각 기관은 자신의 기능과 임무에 따라 점검, 감사 및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 44 조 제 2 항 b 호 규정).

2. 025 년 6 월 11 일자 제 10500/CCTKV.XVI-QLDN1 호 - 명세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안내

해당 공문에 따르면, 운송업 등과 같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여러 건의 운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제 70/2025/ND-CP 호 시행령 제 1 조 제 7 항 a.3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명세서를 첨부하여 발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Note)

시행령 제 70/2025/ND-CP 호 제 1 조 제 7 항 a.3 호

(...) 세금계산서에는 “kèm theo bảng kê số..., ngày...tháng...năm” (해당 명세서 번호 및 날짜를 기재)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명세서에는 판매자의 성명, 세금 코드(TIN), 주소, 재화/용역의 명칭, 수량, 단위, 총액, 작성일자,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입세금공제 방식(신용-세금계산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명세서에는 반드시 “thuế suất thuế giá trị gia tăng”(부가가치세율) 및 “tiền thuế giá trị gia

tăng”(부가가치세액)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총액은 부가가치세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재화/용역은 시간 순으로 나열되어야 하며, 명세서에는 “kèm theo hóa đơn số...ngày... tháng... năm” (해당 세금계산서 번호 및 날짜를 기재)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2025 년 4 월 4 일자 제 244/CCTKV17-QLDN1 호 - 판촉비용에 관한 안내

해당 공문에 따르면, 회사가 판매실적보상, 판촉, 거래 할인, 대금결제 할인 등의 명목으로, 또는 현금이나 현물 형태로 사업자(추징과세 대상 가계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개인사업자를 대신하여 세금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제 126/2020/ND-CP 호 시행령 제 7 조 제 5 항 및 제 40/2021/TT-BTC 호 통칙 부속서 I 에 명시된 세율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촉비용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할 것
- 제 96/2015/TT-BTC 호 통칙 제 4 조에 명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4. 2025 년 6 월 24 일자 제 1992/CT-CS 호 -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용에 관한 안내

해당 공문에 따르면, 소득을 지급한 조직이 이미 폐업하여 개인에게 개인소득세(PIT)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세무 분야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당 개인의 연말 정산 신고 자료를 검토 및 처리하며,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5. 2025 년 5 월 5 일자 제 4370/BTC-DNTN 호 - 행정구역 변경 시 사업자등록 관련 안내

해당 공문에 따르면, 기업, 가구사업자,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및 협동조합 그룹은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기관은 단지 행정구역 변경만을 이유로 등록된 주소 정보를 갱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소 변경은 해당 사업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The above information is for reference only, not specific consulting advice.
For more detailed guidance,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our Office.*

SEOU ACCOUNTING AND CONSULTING COMPANY LIMITED

Hanoi Head office: 10th floor, Charmvit Tower, No. 117 Tran Duy Hung, Yen Hoa Ward, Hanoi City

Tel: (+84) 24 3776 7049/50

Saigon branch: 14th floor, Citilight Building, No 45 Vo Thi Sau, Tan Dinh Ward, Ho Chi Minh City

Tel: (+84)-28-628-628-00